



IV 대학생활

- 학생준수규정
-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병사 · 예비군 · 민방위
- 주요 학생자치단체
- 채플과섬김 · 신앙생활
- 도서관 이용
- 백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 백석대학교 포털사이트 이용
- 사이버캠퍼스 이용안내
-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준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의 재적생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

제3조(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수강, 시험응시, 학술정보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변조 및 대여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재발급 신청서를 교내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자치단체 등록 및 해산

제7조(등록) ①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한 단체에 한한다.

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개별동아리 포함), 각 학부(과)학생회
2.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기타 학습 및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대표자 연서를 한 후 지도교수의 취임승인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V. 대학생활

③ 단체등록 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단체의 등록서류(소정양식) 1부
3. 단체의 규약 또는 회칙 1부
4. 단체 구성원의 명단 1부

제8조(활동기간) ① 등록된 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 초 소정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의 규약, 회칙 등 이미 제출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7일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고서 제출) ① 단체의 활동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과외활동은 본 대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단체의 장은 학년초 학기의 활동계획서 및 전년도 활동결과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제한 및 해산) ① 단체는 매 학기 수시고사 및 학기말고사의 7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에 반하고 기능을 해(害)하고 교내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단체가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무단집회, 성토, 농성, 등교 거부, 고성방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단체장 자격)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학교가 인정한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자
2. 교내·외에서 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3학년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등록을 마친 자, 또는 5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재선거 시에는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등록을 필한 자,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4.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전체 등록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5. 교목실장 또는 학부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6. 학부장 및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후보자 정·부 각각 재학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8. 총학생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한 경력이 없는 자
- ② 학부(과) 학생회장은 「학부(과) 학생회장 선거 시행 세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③ 각 단체의 장이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단체장 인준) ① 학생자치단체장, 단체의 간부 등으로 당선 또는 선임된 자는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장, 간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改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관리경비) 단체장의 선거관리경비는 학생자치활동 경비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학생집회, 간행물, 광고물

제14조(집회 등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간행물 발간 및 배포
3. 교내·외 광고물 부착
4. 과외활동에 있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② 전항 제1호의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 7일 전에 집회목적, 일시, 장소, 대상인원 등을 명기한 집회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처장은 교내·외 집회가 수업에의 지장 유무는 교무처장에게, 장소(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는 총무처장에게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간행물 발간) 학생이 정기·부정기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부장 및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동아리인 경우)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행물 배포) 학생이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배포의 목적, 일시, 장소, 배포대상 등을 기재하고 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광고물 부착)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원안에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운동경기, 경비

제18조(운동경기 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외의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시험기간 중 교외의 운동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국제운동경기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교외단체소속 운동선수로 교외경기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비지출) ① 단체의 활동경비는 학교회계의 경비지출규정 및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경비 신청 시에는 단체의 행사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학생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6장 상 별

제20조(포상)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상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기소 유예된 증거가 확실한 경우
3.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 학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교내에서 음주,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집단행동 등의 행위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또는 통학버스에 음주 승차한 경우
5. 본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경우



8.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9. 본 대학의 시설물을 무단점거·훼손하거나 허락없이 사용·대여·개조한 자 또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
 10. 교내에서 반사회적인 신앙운동을 행하는 자. 다만, 반사회적 신앙운동의 기준은 한국교회와 이단연구 단체의 보편적 판단에 따른다.
 11. 기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 ② 학생 상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예의 및 복장

제22조(예의) 학생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3조(복장) 학생은 학생신분에 맞는 김소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준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학생 준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1. 정 의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구내치료비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2. 수혜자격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함

3. 신청절차

- 사고발생 즉시 신고 : 학생처 서면 또는 전화(550-9037)
※ 사고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음
- 치료종결 후 제출 서류
 - ① 지급신청서 1부
 - ② 진료비계산서 1부
 - ③ 재학증명서 1부
 - ④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⑤ 진단서 1부(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 확인 후 학생통장으로 입금

4. 문의사항

- 학생처(학생복지관 1층, 550-9037)